

규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7년 6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개선방안: 대기업 수용성과 규제개혁의 조화*

김 관 보**·김 태 훈***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실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체계모형에 의한 평가가 실제 동반성장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모형의 평가요인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동반성장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타당성’, ‘상생협력지원 협약이행 조건의 적절성’, ‘법위반 사전예방 및 시스템 구축’, ‘개정(2016.2)이전 계약 공정성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 방법의 적절성’,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등의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이 적절할 수록 동반성장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타당성’, ‘개정(2016.2) 이후 계약 공정성 협약 이행 조건 적절성’,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평가항목은 동반성장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를 실시한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동반성장수준을 반영할

* 이 논문은 2016년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43(kwanbo@catholic.ac.kr)

*** 공동저자,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43(catholic_kim@naver.com)

접수일: 2016/11/13, 심사일: 2017/01/03, 게재확정일: 2017/01/05

수 있도록 현행의 정성평가 방식의 체감도 조사의 정량평가와의 혼합 등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소기업간의 적극적인 동반성장 조성 차원에서 대기업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 용어: 동반성장,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협약이행평가, 규제개혁

I. 서론

최근,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1998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한 ‘낙수효과’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9%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이거나,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재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구조상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원가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충분한 이익을 공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김영산·마정근, 2004).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조의 제10호)에 의거 동반성장의 수준을 매년 평가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공표하고 있다.

2012년 처음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화된 기업 및 산업생태계의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협업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6년차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

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발표 후 제기 되는 문제점 및 진정한 동반성장수준의 정도,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한 기업현실에 걸맞은 동반성장지수 개편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실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체계모형에 의한 평가가 실제 동반성장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 수렴과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동안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법 및 동반성장 수준 검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결과에 대한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정책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정책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¹⁾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한 후,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을 검토한다. 이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동반성장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모형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규제개혁의 조화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동반성장이론 및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모델 구성

1. 동반성장지수 평가 모형의 구성 요인들: 개요

본 장은 본 연구의 핵심인 동반성장지수의 평가모형을 구성할 주요 구성요인들(개념 변

1) 다만 본 연구는 대기업 관점에서 동반성장지수 평가 모형 및 성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 자료에 근거한 대기업 수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협력사 인식도 조사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힘. 당초 연구진행 초기(2016년 3~4월)에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체인 수급사업자들에게도 인식도 조사 설문지를 배포했으나, 응답률이 거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최근(2016. 12. 9) 후속 연구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 1차 협력사 317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반성장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발표함.

수)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동반성장지수평가의 성과를 실증적인 통계분석을 시도함에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제시된 동반성장지수 평가 모형은 독립변수인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들과 종속변수인 동반성장수준(지수)를 개념변수로 설정한 바 본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종속변수인 동반성장수준 및 지수를 설명하기 위해 동반성장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동반성장 이론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구성 항목들을 현행 평가 체계 중심 및 관련 선행연구 중심으로 고찰한다.

2. 동반성장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및 동반성장이론

(1)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대한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현행 동반성장지수평가의 근거가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제정 배경은 2005년 참여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상생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핵심과제 선정에서 출발하였다(산업자원부, 2005: 310).

상생협력의 기본방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상생협력의 혁신네트워크 관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등 3자간에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2006년 제정된 상생법의 핵심 사항은 규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었다.

2005년 상생협력의 원년, 2006년 상생협력 정착의 해, 2007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의 해,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2008~2009년 상생협력 심화·확산의 해로 추진방향을 설정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성과대회(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참여)」를 거치면서 상생법 제정(2006. 3), 국무총리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원회」설치(2006. 8) 등으로 지속적으로 심화·발전해 나갔다(산업자원부, 2007: 49; 지식경제부, 2008~2009: 35).

2006년~2007년간은 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²⁾ 운영)

2)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004년 12월 대중소기업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협력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문화를 확산해 공정거래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최근 그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되었음(2016. 12. 30).

중심으로 R&D·인력·판로·자금 등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2008년 이후에는 상생협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3년 단위의 범정부적 추진 과제와 실행방안을 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관 합동으로 2010년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명박 정부에서 상생협력의 차별화 용어로 동반성장을 사용)을 통해 대기업 스스로의 인식전환, 중소기업의 자발적 자기혁신을 유도하도록 시장친화적인 원칙하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수립하였다(지식경제부, 2010: 29).

정부는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동반성장위원회 출범(2010. 12. 13)을 지원하였으며,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동반성장팀을 지식경제부내에 신설(2010. 11)하였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사이버 및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개소(2010. 12)하여 운영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0).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업별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준 수립을 위해 동반성장지수 (Win-Win Index)를 마련하여 평가 후 공표하기 시작하였다(2012. 5).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참여 기업에 대한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체감도 평가를 종합해서 발표해 오고 있다(지식경제부, 2012: 25; 산업통상자원부 2013~2014: 34).

(2) 동반성장 이론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상생협력’에 토대를 둔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동반성장종합지원센터는 “동반성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되어 기업생태계의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보존하고 진화해 가기 위한 상호협력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현 외(2011)는 동반성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호혜적 거래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경제행위”로 정의하였다.

동반성장에 관하여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동반성장 이론의 한 분야로 Williamson(1975, 1985)의 거래비용 이론이 논의될 수 있다. Williamson은

1960년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을 제시하였는데,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서비스를 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계층적 기업 조직 스스로 생산 또는 관계적 계약을 통한 혼합 조직인 세 가지 거버넌스 구조 논리를 제시한다(Williamson, 1985). 시장실패 상황에서 기업은 내부조직화를 통한 자원 및 서비스를 자체 생산하는데, 이에 따른 조직 비대화로 인하여 규모의 비경제와 경직성 등으로 인해 조직실패의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실패 및 계층적인 조직실패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신뢰’(trust)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거래이다. 즉 Williamson은 신뢰를 통한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ing)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일종의 협력적 하도급관계 등) 이에 따른 결과로 시장실패와 조직실패의 위험성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급사슬이론(Supply Chain Model: SCM) 역시 동반성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론으로 Forrester(1961)가 제시한 채찍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Forrester는 제조업자가 감지하는 수요 변동 폭은 실제 수요 변동 폭보다 훨씬 크고, 계절성 또한 실제 수요의 계절성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 채찍효과의 발생 원인으로 정보공유의 부족과 공급사슬의 복잡성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Forrester는 소몰이꾼이 휘두르는 채찍의 커브가 손목 근처에서는 적은 변화를 보이지만, 채찍의 끝 부분은 크게 변화하는 것을 빗대어 시장에서의 수요의 변화가 최종소비자에게는 매우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생산업체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였다. 즉, 생산효과의 큰 영향을 받는 생산업체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급사슬 상의 다른 기업에게 최종적인 수요 변동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수요 변동이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공급사슬이론은 공급사슬상에서 위치한 기업들 간의 협력(cooperation)이 유지될수록 공급사슬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산업생태계의 경쟁 환경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 기업 간 수요정보 등 정보공유의 통합관리를 통해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의 채찍효과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현행 동반성장실적 평가에서 점검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성과공유제도가 공급사슬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oore(1993)의 기업생태계 이론은 기업경영환경을 자연생태계와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기업생태계의 진화(발전단계)를 탄생, 확장, 리더십, 자기갱신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생태계 자체 및 내부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탄생단계의 협

력적 과제로 고객이나 공급업자와 공동으로 혁신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고 인식하며, 경쟁적 도전 단계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핵심적인 고객이나 공급업체와의 결속을 다진다.

Moore의 기업생태계 이론은 대기업이 협력 생태계에서 전략적인 상생을 위해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공적인 생태계의 조건을 기업의 경영전략에 접목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생물학적 생태계와 같이 유기적 결합체로 내부의 진화를 위해서 공동체로서의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경험의 확대 및 재생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진화와 생존으로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공진화(co-evolution)를 선택해야 하고, 그러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은 배려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동의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등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의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이론으로 조직혁신 이론이 있다. 조직혁신이론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개발협약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협력을 설계할 수 있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혁신역량이 극대화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대기업의 혁신 역량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역량 역시 극대화되는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한 파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은 이러한 이론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게임이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경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한 선택이 이루어질 때(Cooperation-Cooperation 전략하의 Nash-Equilibrium), 상호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수익분배에 있어서, 일방적인 한쪽만의 이익을 반영하는 선택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상호 win-win하는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한다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익의 극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3.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 구성 내용: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모형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1) 동반성장지수 개요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생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1~'13년) 및 '11년도 시행계획을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표하였다.

2010년 9월 29일 수립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동반성장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총 4대 전략 및 23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 확립, 둘째, 거래 공정성 향상 및 거래질서 개선, 셋째, 중소기업을 역량있는 동반자로 육성, 넷째, 동반성장의 전면적 확산이 4대 전략이다.

그 중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 확립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로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이 설정되었다. 그 일환으로 2011년부터 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통한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고 있다.

〈표 1〉 동반성장지수 중점사항 및 세부내용: 시행 초기(2011~2013)

중점사항	세부 내용
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가동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과 현장 파급효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력 지수(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합한 단일 평가시스템 구축 - 대기업의 이행 계획·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평가와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 파악을 위한 체감도 평가 병행 → Cross-check가 가능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선진적 거래관행 형성 유도에 중점	- ① 구두발주, ② 부당한 감액, ③ 기술탈취, ④ 부당 자료요구 등 고질적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항목에 높은 가중치 부여 -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는 평가 항목들을 대폭 반영(내부 임직원 평가시스템 개선도, 보복금지시스템 운영, 발주물량 사전예시제 운영 등)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선진화된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계 유도.
기업별 평가를 통해 상호비교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동반성장의 현장문화 확산을 가속화	- 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평가대상을 그룹화(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금속·비금속, 건설, 도·소매, 통신·정보서비스 등 6개)하여, 동종그룹 내 매출액 상위 기업을 대상(2011년 56개)으로 평가 추진 - 동반성장지수 평가 상위기업에 대하여 정부 R&D사업·공공 입찰 참여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추진
산업전반에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평가대상 업종 및 기업을 지속 확대하여 평가 설계·실시	- 그 밖의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기업 개수도 연차별로 확대(2013년 100개사 내외)

자료: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201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1년 ~ 2013년)」

(2)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동반성장지수는 2011년 시행부터 2016년 2월까지와 공정거래협약 평가가 개정된 2016년 2월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2011년부터 2016년 2월까지의 동반성장지수 주요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실적평가의 경우, ‘협약의 충실도(30점)’, ‘협약 내용의 이행도(70점)’을 매년 1-3월 동안 연 1회 정량평가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는 ‘거래관계(40점)’, ‘협력관계(30점)’, ‘운영체계(30점)’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성평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 2〉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2016년 2월 개정 이전)

구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대상	대기업	1·2차 중소기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중소기업 설문조사(정성)
평가지기	매년 1회(1~5월)	매년 2회(8~12월, 1~5월)
주요 평가 항목	1.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 - 협약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 정도 -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납품단가, 매출확대, 금융, 결제수단 등)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1. 거래관계(40점) - 공정 거래 (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 거래조건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협약내용의 이행도(70점)	2. 협력관계(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상 공정거래 이행 정도 - 상생협력 지원내용 이행 정도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로, 경영관리, 인력 분야 등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 동반성장에 적극적 참여 - 기간연장, 재협약, 협력사 지원 등 ▫(감점) ① 하도급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 시 ②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비리 등 	<p>3. 운영체계(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추진체계, 환경조성 등 ▫(가점) 적합업종 준수,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재원, 국내외 판로지원,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동반성장 확산 활동,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 등 ▫(감점) 적합업종 위반, MRO가이드 불이행 등 사회적 물의,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자료: 동반성장백서(2015: 35)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의 현행 평가 기준을 그 동안의 문제점을 검토해 2016년 2월 협약평가 기준을 다음 <표 2-3>과 같이 개정하고, 개정안을 2017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표 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전·후 비교

	개정 前		개정 後	
	세부 내용	배점	세부 내용	배점
기준 명칭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등에 관한 기준	-
평가 체계	충실도(30점)+이행도(70점)+가감점	-	이행도(100점)+가감점	-
평가 비중	공정거래 항목(19점) 상생협력 항목(81점)	-	공정거래 항목(75점) 상생협력 항목(25점) ※ 일부 상생협력 항목 공정거래로 이동	-
공정 거래 평가 항목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표준협약서 반영 정도	2점	삭제	-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 실천 사항 준수	2점	좌동	3점
	-	-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2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8점	좌동	6점
	-	-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 여부	8점

	- (상생협력 평가항목에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및 개선정도 (상생협력 평가항목에서 이동)	22점
공정 거래 평가 항목 (계속)	-	-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의 형평성 여부	3점
	-	-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2점
	- (상생협력 평가항목에 있음)	-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상생협력 평가항목에서 이동)	2점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2점	좌동	4점
	-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점
	-	-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 절차 마련 및 운영	5점
	-	-	법외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2점	좌동	4점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3점	좌동	4점
	상생 협력 평가 항목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12점	삭제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6점	無 (공정거래 평가항목으로 이동)	-
금융(자금) 지원		11점	좌동	7점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및 개선정도		22점	無 (공정거래 평가항목으로 이동)	-
기술지원 및 보호		9점	좌동	4점
인력·채용 지원		2점	삭제	-
기타 지원(임원 평가 반영 등)		4점	삭제	-
2차 협력사 지원방안 도입·운영		15점	좌동	5점
-	-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효율성 증대 정도	9점	
가점 항목	1개월 내 재협약	1점	좌동	1점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최대 2점	좌동	1점
	CP 등급	최대 1.5점	좌동	최대 1.5점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	2.5점	좌동	2점
	CCM 인증 취득	1점	좌동	1점
감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경고 이상의	최대	좌동	최대

항목	조치를 받은 경우	30점		30점
	-	-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5점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청탁, 배임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건당 10점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건당 10점

자료 : 동반성장백서(2015: 40); 공정거래위원회 (2016)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및 기준 개정 설명회 자료. 배점은 업종에 따라 상이함.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의 ‘체감도 조사’는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르며, 1차 협력사의 평가결과를 80%, 2차 협력사의 평가결과를 20%로 환산 후 합산하고 있다.

〈표 4〉 동반성장위원회 ‘체감도 조사’ 주요 평가항목(제조업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차 협력사 평가항목 (100점)	1. 거래관계 (40점)	(1) 공정거래 구두발주 및 부당한 발주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 금지 / 어음할인료나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 물품 인수의 부당 지연, 거절 혹은 반품 / 납품대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물품으로 지급 / 산업재산권 유용 또는 탈취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 부당한 원가자료 요구나 현장실사 강요 / 부당특약·이중계약 / 전문 인력 유출	20점
		(2) 거래조건 결제수단(현금, 현금성 결제) / 법정기한 내 납품 대금 지급 / 납품 단가의 합리적 결정 / 원가 상승요인의 가격 반영 / 추가비용 발생 시 단가조정 / 정당한 사유 없는 단가 인하 / 부당한 대금 감액 / 계열사나 관계회사의 부당한 특혜 / 공개(전자) 시스템 운영 / 성과 공유제 시행	20점
	2. 협력관계 (30점)	(1) 자금 분야 직접 자금 대여(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간접 금융 지원(은행·보증기관 연계지원)	2점
		(2) 연구개발 분야 공동 연구·개발 /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 공동으로(생산)기술 공유 또는 활용	6점
		(3) 생산 분야 공정개선 및 기술(품질) 지도 / 설비 대여 / 원자재 구매지원	6점
		(4) 판로 분야 국내 판로 협력 / 해외 판로 협력	4점
		(5) 경영관리 분야 경영관리, 경영혁신 지원 / 복지·후생 지원 / 애로사항 청취	6점
		(6) 인력 분야	6점

		교육·연수·훈련 등 지원 / 근로조건, 작업환경 개선 / 인력채용 지원(대기업의 브랜드 활용, 채용박람회, 공동채용 등)	
	3. 운영체계 (30점)	(1) 인식 및 비전공유 CEO의 동반성장 의지 / 거래 담당자의 의식수준 / 비전공유 정도	6점
		(2) 추진체계 동반성장 계획 수립 / 동반성장 조직 운용 / 공식 협의기구 / 협력 중소기업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운영 / 합리적인 협력사 선정·운영 / 명문화된 보복금지 지침 보유 / 기밀유지약정 체결 / 기술·영업 비밀보호	16점
		(3) 환경 조성 청렴수준 평가 / 인격적 모독이나 일방적 압박 경험 / 산업재해에 대한 부당한 처리요구 / 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안내	8점
2차 협력사 평가항목	공정거래	대기업의 2차 협력사와 동반성장 의지 / 결제조건 / 납품단가 조정 정보 공유 /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지원 /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	100점
가감점 평가항목		- 중기적합업종 이행, 성과공유제, 국내 판로지원, 해외 판로지원, 인력개발 및 교류지원, 생산성향상, 동반성장 투자채원, 민관공동투자, 구매 연계형 기술개발, 산업혁신운동,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동반성장 전문기관 지원 및 문화 홍보, 상생결제시스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 및 기술 나눔 실적,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창조적 동반성장 활동 등	가점 (12점 이내)
		- 적합업종 위반, MRO 가이드라인 불이행, 기술탈취, 전문 인력 탈취,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 행위	감점 (-7.5점 이내)

자료: 동반성장백서(2015: 40)

- 주: 1)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평가결과는 80:20의 비율로 환산 후 합산
2) 2차 협력사 평가의 경우 건설·유통·정보통신 일부 업종 제외

(3)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은 2016년 기준 176개 기업이며, 2012년은 56개 기업, 2013년 73개 기업, 2014년 100개 기업, 2015년 112개 기업이 평가를 받아, 평가대상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176개 기업이 평가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명단은 <표 5>와 같다.

〈표 5〉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2016년 기준)

	1. 제조업(102)					2. 건설(22)
	전기·전자(28)	기계·자동차·조선(43)		화학·비금속·금속(31)		
1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한국GM	코닝정밀소재(중)	효성	대림산업
2	삼성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대우건설
3	삼성전기	두산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동부건설(*)
4	삼성테크윈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미포조선	현대제철		두산건설
5	삼성SDI	삼성중공업	현대위아	KCC	LG하우시스	롯데건설
6	LG전자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이랜드월드	LG생활건강	삼성물산
7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STX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중)	포스코건설
8	LG이노텍	두산엔진	STX중공업(*)	한국쓰리엠(중)	LF(중)	한진중공업
9	LS전선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중)	동부제철(*)	태광산업	한화건설
10	대한전선(*)	만도	경신(1)	제일모직(舊에버랜드)	삼양사(중)	현대건설
11	SK하이닉스	현대다이모스	덕양산업(1)	금호석유화학	오씨아이	현대산업개발
12	LS산전	현대엘리베이터	성우하이텍(1)	코오롱인더스트리	도레이첨단소재(중)	GS건설
13	코웨이(중)	현대파워텍	에스엔티모티브(1)	한화케미칼	한국바스프(중)	SK건설
14	한솔테크닉스	LS엠트론	한국델파이(1)	포스코캠텍	도레이케미칼(중)	삼성엔지니어링
15	엠코테크놀러지(중)	르노삼성자동차(중)	한온시스템(舊한라비스테온공조)(1)	한솔섬유(중)	화승알앤에이(중)	코오롱글로벌
16	지멘스(중)			태평양물산(중)	한샘(중)	현대엔지니어링
17	대덕전자(1)	힘스	유라코퍼레이션(1)			KCC건설
18	서울반도체(1)	쌍용자동차(중)	한일이화(1)			태영건설
19	희성전자(1)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중)	다스(1)			계룡건설(중)
20	파트론(중)	블로그룹코리아(중)	한국프랜지공업(중)			부영주택
21	휴맥스(중)	대원강업(중)	화신(중)			호반건설(중)
22	세메스	타타대우상용차(중)	평화정공(중)			한양(중)
23	LG실트론	에코플라스틱(중)				
24	가온전선					
25	동우화인켐(중)					
26	세방전지(중)					
27	일진전기(중)					
28	쿠쿠전자(중)					
	3. 식품업(17)		5. 마트·편의점(13)		7. 백화점(4)	9. 정보서비스업(5)
1	롯데제과	CJ제일제당	롯데마트	GS리테일(GS25)	롯데백화점	삼성SDS
2	농심(중)	대상(중)	이마트	한국미니스톱(중)	신세계백화점	LG CNS
3	오뚜기(중)	동원F&B(중)	홈플러스	BGF리테일(중)	현대백화점	SK C&C
4	하이트진로	남양유업(중)	농협유통	코스트코리아(중)	이랜드리테일	현대오토에버
5	롯데푸드	매일유업(중)	롯데슈퍼	다이소아성산업(중)		포스코아이스티
6	삼립식품(중)	한국아쿠르트(중)	코리아세븐	롯데하이마트		

7	빙그레(중)	오리온(중)	한국암웨이(중)			
8	오비맥주(중)	해태제과(중)				
9		풀무원식품(중)				
	4. 가맹점업(4)		6. 홈쇼핑업(4)		8. 통신업(3)	10. 플랫폼사업자(2)
1	CJ푸드빌	파리크라상(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SK텔레콤	네이버(중)
2	한국인삼공사	롯데리아	CJ오쇼핑	현대홈쇼핑	LG유플러스	카카오(중)
3					KT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2015. 12. 17)

주: (중): 중견기업 (1): 1차 협력사, (*): 경영악화로 평가 유예 기업 5개사

(4)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인센티브

2016년 현재 동반성장지수는 평가기업의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대상기업을 4개 등급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있다.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구분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또는 ‘우수’등급인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등급별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별 인센티브 내용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조달청)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3년간)
국세청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거래위원회	최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 시, 우수 기업 우대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자료: 동반성장백서(2015: 40)

(5) 동반성장지수 평가현황(2011~2014)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반성장지수 보도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2011~2014년 평가항목별 결과 추세

구분		2011	2012	2013	2014
협약 이행 평가	4대 가이드라인(실천사항) 도입	▽	◎	▽	◎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정도	▽	▽	▽	▽
	표준계약서 사용	▽	▽	○	○
	현금 결제비율	74.4%	61.6%	75.76%	75.4%
	납품단가 조정실적	6,937억 원	3,810억 원	5,393억 원	36,663억 원
	자금지원	22,081억 원	36,318억 원	55,958억 원	129,832억 원
	1~2차간 협약체결	9,127건	16,745건	26,168건	26,270건
	기술보호지원	489건	1,086건	4,465건	2,282건
	교육훈련 지원	396,584명	638,444명	233,179명	259,216명
	인력지원	25개사	44개사	56개사	91개사
체감도 조사	공정거래	◎	◎	◎	◎
	협력	▽	▽	▽	▽
	동반성장체제	◎	◎	◎	◎

주: 미흡 ▽, 보통 ○, 우수 ◎

각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협약이행 평가에서 ‘4대 가이드라인(실천 사항) 도입’부문은 2011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매우 개선되었으나, 2013년 다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14년에는 매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정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표준계약서 사용’은 2011년과 2012년은 미흡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 개선되어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2011년 대비 2012년 하락하였으나, 2013년 다시 상승하였고, 2014년도 비슷한 수준이다. ‘납품단가 조정실적’은 2011년 6,937억 원에서 2012년 3,810억 원으로 급감하였다가, 2013년 5,393억 원으로 향상되었고, 2014년 36,663억 원으로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자금지원’부문 역시 2011년 22,081억 원 규모에서 2014년 129,83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1~2차간 협약체결’건수는 2011년 9,127건에서 2014년 26,270건으로 약 2.5배정도 향상되었다.

‘기술보호지원’건수는 2011년 489건에서, 2014년 2,282건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교육훈련지원’은 2011년 396,584명에서 2012년 대략 2배 수준인 638,444명으로 급증하였

던 반면, 교육훈련 실적인정 기준이 노동부 및 교육부 등 정부기관이 인정한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은 인원만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2013년 233,179명으로 감소하였다. ‘인력지원’은 평가대상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지원 기업 수 역시 2011년 25개사에서 2014년 91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체감도 조사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정거래’부문과 ‘동반성장체제’부문은 2011년 우수로 평가된 이래 2014년까지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협력부문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동반성장평가 모델 선행연구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동반성장지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종욱(2014)은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유인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대·중소기업의 인센티브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텝업(step-up) 방식의 인센티브 구조를 제시하였다. 스텝업 인센티브 모델은 등급을 1스타에서 5스타까지 구분하여, 1스타와 2스타는 이행난이도가 낮아 중소기업과 거래규모가 적은 업종의 대기업이나 이제 막 동반성장을 추진하려는 초기단계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3스타는 현금결제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각각 1%p, 0.05%p 상향조정하고 국내 중견·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원·부자재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시하였다. 4스타와 5스타는 현행 인센티브인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외에 ‘세무조사 1회’ 면제가 신설되어,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5스타에서는 명예졸업제로 운영하여, 차년도 평가를 면제하고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2년간 부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해당 인센티브 디자인은 Pass/Non Pass 방식의 절대평가 도입을 전제로 하였다.

이성근(2014)은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에 관하여 동반성장을 보다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Step-up 방식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현행 공정거래협약의 문제점으로 기업규모와 역량, 업종 특성 등 평가기업의 상이한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 제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공유가치(CSV) 창출요소에 관한 평가항목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실제 공유가치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의 평가가 상대적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기존의 평가항목을 활용하되 평가항목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경영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각 기업이 현재 보유한 역량을 고려한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Step-up 방식은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을 2가지 type으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방식은 현행 협약 평가항목이 1~5단계 모두 평가기준으로 적용되나, 각 단계별 인증 조건(최소 획득점수)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두 번째 방식은 지수 평가기업을 대상으로 한 1~5단계별 평가기준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의 프레임을 디자인하고 이행난이도 조사결과와 정성적인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평가기준을 각 레벨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김수욱(2014)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주요 기업의 1차 협력사(30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현행 체감도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역량별 수요에 따른 체감도 평가방식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체감도 조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형식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동반성장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둘째, 계약 특성, 산업구조, 협력활동 수요 등이 다른 업종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셋째, 주관적인 정성평가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과의 괴리발생, 넷째, 과도한 조사대상 표본설정에 따른 문제점 및 공정거래협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되는 조사시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향으로 협력사의 역량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체감도 조사 항목의 재설계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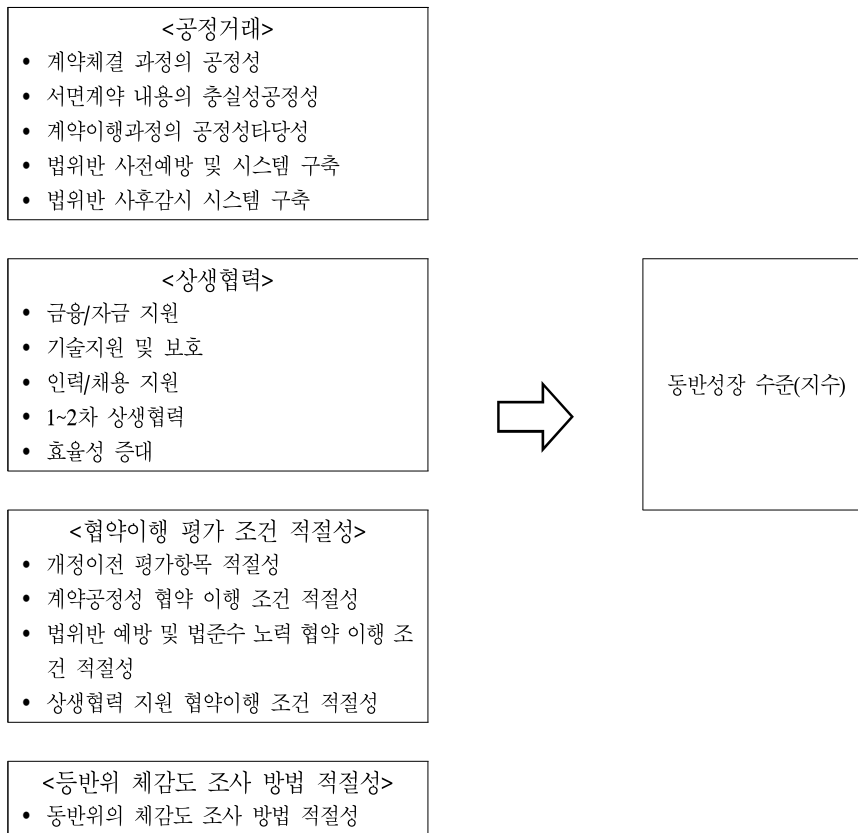
김기찬(2014)은 기업생태계 선순환 모델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의 시행성과 검증모형을 제시하였다. 검증모형은 기업생태계 건강성을 판단하는 3대 요소인 강건성, 시장창조성, 생산성이 얼마나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강건성은 ‘종업원 1인당 연구개발비 투자’, ‘종업원 1인당 특허 수’를 측정지표로 삼고, 틈새시장창조성은 ‘종업원 1인당 신제품 매출 비중’, ‘종업원 1인당 수출비중’으로 측정하며, 생산/수익성은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자산순이익률(ROA)’를 측정지표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전문화 측정지표와 동반성장 투자효율 측정지표도 제시하여, 동반성장지수 시행성과 검증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Ⅲ. 연구분석 틀: 연구 모형 및 조사설계

1. 연구 모형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모형이 실제 동반성장 수준과의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평가 항목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동반성장수준(지수)을 설정하였다.³⁾

<그림 1> 동반성장수준(지수) 영향요인 분석 모형



3) 본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 설정은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으며, 연구모형의 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로 다음 장의 회귀분석으로 같음하였음.

동반성장수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의 개념변수들은 ‘공정거래’요인, ‘상생협력’요인, ‘공정위 협약이행평가 요건 적절성’요인, ‘동반위 체감도 조사 방법 적절성’요인 등 총 4가지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각 개념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측정(관찰)변수를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서의 개념변수 및 세부 측정변수들 및 설문문항은 다음 <표 8>과 같다(김관보 외, 2009).

<표 8> 독립변수 및 설문문항

구분	독립변수	측정변수	설문문항
공정거래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	협력업체 공정한 선정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공정한 하도급거래 4대 실천 사항 중 하나) 준수
		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계약이전 주요 정보(물량, 납기 등)를 사전에 알리는 시스템 구축
	서면계약 내용의 충실성·공정성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하도급약서 사용
		계약조항의 명시	중소협력사(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준수
		쌍방 간의 계약 불이행 제재 명시	거래 기업 간(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티(제재) 제시
	계약 이행 과정의 공정성·타당성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이행 결과의 권익증진	하도급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
		제재조치 이행 결과	거래 기업 간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 부과의 이행
		분쟁해결절차 마련 및 운영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협력사 매출 확대 도모	중소협력사(수급사업자)의 매출 확대 도모
	범위반 사전 예방 및 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공정 하도급거래 4대 실천사항 중 하나) 준수
		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공정한 하도급거래 4대 실천사항 중 하나) 준수
		계약체결 실천사항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 사항’(공정한 하도급거래 4대 실천사항 중 하나) 준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정거래 추진 부서 설치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절차 마련 및 운용
	불법 임직원 인사 불이익	하도급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상생 협력	금융/자금지원	중소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금융(자원) 지원의 적절한 이행
	기술지원 및 보호	중소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보호(기밀유지약정NDA체결 포함)의 적절한 이행
	인력·채용지원	중소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인력 및 채용 지원의 적절한 이행
	1~2차 상생협력	중소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의 적절한 이행(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안내 받은 경험 포함)
	효율성 증대	중소협력사(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효율성 증대
공정위 협약 이행평가 조건 적절성	개정이전 계약 공정성 협약 이행 평가조건 적절성	2016년 공정위 협약이행평가 개정 이전의 평가항목 및 배점(총실도 30점+ 이행도 70점)이 전반적으로 더 적절함
	개정 이후 계약 공정성 협약 이행평가 조건 적절성	개정된 협약이행평가 항목 중 계약의 공정성(평가항목 배점: 50점)에 대한 협약이행조건은 전반적으로 적절함
	개정 이후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개정된 협약이행평가 항목 중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에 대한 협약이행 조건(평가 항목 배점: 25점)은 전반적으로 적절함
	개정 이후 상생협력지원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개정된 협약이행평가 항목 중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협약이행조건(평가 항목 배점: 25점)은 전반적으로 적절함
동반위 체감도 조사 방법 적절성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방법	현재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 평가방법과 평가항목은 전반적으로 적절함

종속변수로 설정한 ‘동반성장수준(지수)’은 ‘동반성장수준’, ‘동반성장지수의 대표성’, ‘동반성장지수 현실 적합성’,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신뢰성/수용성’을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9〉 종속변수 및 설문문항

종속변수	측정변수	설문문항
동반성장 수준(지수)	동반성장 수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반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동반성장지수의 대표성	현행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수준을 잘 대변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 현실적합성	동반성장지수는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동반성장지수는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뢰성/수용성	나는 동반성장지수를 신뢰하고 수용한다

2. 조사 설계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속하는 기업들로, 총 6개 분야의 60개 기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평가대상 총 176개 기업 중 동반성장협약에 지속적인 참여해 온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률은 55%를 보였다. 설문에 응한 60개 기업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전기전자 10개, 기계·자동차·조선 10개, 화학·비금속·금속 12개, 도소매식품 18개, 건설 8개, 정보서비스 2개이다.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⁴⁾

IV.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독립변수 ‘동반성장수준(지수) 영향요인’ 평가항목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도가 종속변수 ‘동반성장수준(지수)’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R^2(adjusted\ R^2)$ 값은 0.850(0.799)로 나타나 전체 회귀모형의 약 85%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귀분석 결과치는 다음 <표 10>과 같다.

4) 동반성장수준(지수)의 영향요인 및 동반성장수준(지수)에 대한 설문 문항은 동반성장 평가대상 대기업들에게 동반성장수준 영향요인으로 적합한지를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음.

〈표 10〉 동반성장수준(지수)의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Coefficients)

모델(model)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통계량 (t)	유의 확률 (Sig.)	공선성 진단	
	B	표준 오차	Beta			Tolerance	VIF
(상수)	-.982	.449		-2.188	.034	-1.886	-.077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389	.116	.457	3.364	.002**	.156	.622
서면계약 내용의 충실성·공정성	.219	.125	.210	1.746	.088	-.034	.471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타당성	-.416	.139	-.338	-3.002	.004**	-.696	-.137
범위반 사전예방 및 시스템 구축	.273	.113	.287	2.415	.020*	.045	.500
범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336	.116	-.362	-2.892	.006**	-.570	-.102
금융/자금지원	.069	.089	.100	.780	.440	-.109	.248
기술지원 및 보호	.051	.112	.072	.455	.651	-.174	.276
인력·채용지원	.078	.074	.119	1.051	.299	-.072	.228
1-2차 상생협력	.172	.129	.277	1.331	.190	-.089	.433
효율성 증대	-.003	.073	-.005	-.044	.965	-.150	.143
개정이전 계약 공정성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247	.097	.279	2.558	.014*	.052	.442
개정 이후 계약 공정성 협약 이행 조건 적절성	-.399	.111	-.481	-3.576	.001**	-.623	-.174
범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222	.080	.257	2.770	.008**	.060	.383
상생협력지원 협약이행 조건의 적절성	.361	.072	.477	5.032	.000**	.216	.505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방법의 적절성	.244	.092	.266	2.649	.011*	.058	.430

주. * p<0.05, ** p<0.01

모델 요약(Model Summary)

R	R 제곱 (R Square)	수정된 R 제곱 (Adjusted R Square)	추정 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0.922	0.850	0.799	0.35033	1.903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동반성장수준(지수)
ANOVA: F = 16.594(.000)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 ‘동반성장수준(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정(+) 효과를 미치는 변수와 부(-)의 효과를 미치는 변수로 구분된다.

먼저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난 변수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으로 β 값이 0.38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생협력지원 협약이행 조건의 적절성’의 β 값이 0.361로 두 번째로 높은 정(+)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영향력의 크기 순서대로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시스템 구축’의 β 값이 0.273으로 나타났고, ‘개정이전 계약 공정성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beta=0.247$)’,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방법의 적절성($\beta=0.244$)’,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beta=0.222$)’ 순서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수준(지수)’에 부(-)의 영향관계가 나타난 변수 중에는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타당성’의 β 값이 -0.416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타당성’은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통틀어 가장 큰 β 값을 보임에 따라, ‘동반성장수준(지수)’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부(-)의 효과를 보인 변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개정 이후 계약 공정성 협약 이행 조건 적절성($\beta=-0.399$)’,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beta=-0.336$)’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동반성장수준(지수)에 대한 영향요인 요약

영역	변수 명	β 값		전체 영향력 순위
		(+) 효과	(-) 효과	
공정거래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389		3
공정위 평가조건	상생협력지원 협약이행 조건의 적절성	.361		4
공정거래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시스템 구축	.273		6
공정위 평가조건	개정이전 계약 공정성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247		7
동반위 체감도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방법의 적절성	.244		8
공정위 평가조건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222		9
공정거래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타당성		-0.416	1
공정위 평가조건	개정 이후 계약 공정성 협약 이행 조건 적절성		-0.399	2
공정거래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0.336	5

‘동반성장수준(지수)’에 대한 영향요인을 요약하면, 전체 변수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과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요인이 모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약 이행 과정의 공정성·타당성’과 ‘개정이후 계약 공정성 협약 이행 조건 적절성’의 수준이 동반성장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과 ‘상생협력 지원 협약이행 조건의 적절성’ 등은 동반성장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동반성장수준(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영역의 요인들 중에서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과 ‘법위반 사전예방 및 시스템 구축’은 동반성장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타당성’과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은 동반성장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면계약 내용의 충실성·공정성’은 동반성장수준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영역에서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가대상 기업들은 사후감시 시스템보다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이 동반성장수준에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이 동반성장수준에 부(-)의 영향관계가 나타난 것은 사후감시 시스템의 합리적인 설계를 요구하거나, 동반성장 참여에 다소 소극적일 있다는 인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이행과정보다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이 동반성장수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인식하였는데, 계약 이후의 이행과정에 앞서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이 동반성장수준 향상에 더 효과적인 정책도구라고 판단할 수 있다.

‘상생협력’영역에서는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인력·채용 지원’, ‘1~2차 상생협력’, ‘효율성 증대’ 등 5개 요인들 모두 동반성장 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생협력 영역의 독립변수들이 동반성장수준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통계결과가 상생협력이 동반성장에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분석 샘플을 더 확보할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반성장 협약 참여 대기업이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상생협력’에서의 평가항목들은 정량평가가 적합한 항목들이지만, 체감도 조사에서는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다보니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량평가로 진행되었을 경우보다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인식이 있어, ‘상생협력’ 영역의 평가에 대한 실효성에 신뢰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 공정성 협약이행 평가조건 적절성’ 영역에서는 ‘개정이전 계약 공정성 협약이행 조건 적절성’,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협약이행 조건의 적절성’, ‘상생협력지원 협약이행 조건의 적절성’은 동반성장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정 이후 계약 공정성 협약이행 조건의 적절성’은 동반성장수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영역에서 사후보다는 사전, 계약 이행보다는 계약 체결, 개정 이후보다는 개정 이전에 관한 독립변수들이 동반성장수준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적·처방적 변수들은 모두 동반성장수준에 부(-)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부(-)의 영향관계에 있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정(+)의 영향관계에 있는 변수들에 비해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가 더 크다는 점에서 동반성장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방법의 적절성’ 항목 역시 동반성장수준(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기업은 사전적인 평가항목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 및 사후적·처방적 수단에 대한 규제 차원의 평가체계를 적절히 조화함으로써 현 동반성장평가 체계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대기업 수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의 조화

본 연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가 실제 동반성장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평가대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수준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공정거래, 상생협력, 협약이행 평가 조건 적절성, 동반위 체감도 조사 방법 적절성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세부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동반성장수준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방안으로 도출된 대기업 수용성 제고방안 및 규제개혁과 조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되는 기업은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적절할수록 동반성장 수준 역시 높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대상자들은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 중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항목이 평균수준 이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공정거래” 영향요인(개념변수)은 동반성장수준(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동반성장지수 가중치 및 평가 항목 배점 고려 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할수록 동반성장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해당 평가항목이 동반성장 수준의 부정적 영향관계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대금 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정도(대금지급절차 마감 횟수, 하도급대금지급 일수 및 단축 정도,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 정도,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 정도),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 적절성,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용(수급사업자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해외 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등이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획일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기찬 외 2명(2007)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능력이나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특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유형을 L형, A형, J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협력방식도 상이하게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매출확대 도모실적과 같은 평가항목의 경우 대기업이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운 항목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가 동반성장지수에 중요한 요인들이긴 하지만 세부 측정변수인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거래 협약이행 실적 평가시 평가대상 대기업들의 협약이행 평가 조건들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애로 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평가항목이 적절할수록 동반성장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나타난다. 반면,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에 관한 평가항목은 적절할수록 동반성장 수준이 낮을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거래에 있어서 법규위반에 있어 사후감시로 인한 규제차원의 제재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 관계가 수평적이지 못하며, 수직적인 구조로 대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미 위반한 경우, 사후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기에는 중소기업협력체

에서는 보복조치 부담 또는 동반성장 의지 약화, 중복 과잉 처벌 등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에 범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상생협력 분야를 평가하는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인력·채용지원’, ‘1~2차 상생협력’, ‘효율성 증대’의 평가항목들이 동반성장 수준에는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분야보다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⁵⁾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5개 항목의 경우 현재 동반위 체감도조사에서 정성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달성한 결과와는 달리 왜곡된 평가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0% 정성평가 방식의 현행 체감도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체감도 조사 항목 중 정량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을 위주로 일정 부분 정량평가 도입의 고려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실증적 분석결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범위반 사전예방 및 시스템 구축’ 등 사전적 평가항목들은 동반성장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보이지만,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 ‘범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등 사후적 평가항목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분석대상이 피평가자인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평가자인 대기업 입장에서 사전적 평가항목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하기 용이하지만, 사후적 평가항목들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업종에 구분이 없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준수하기 어려운 평가항목들은 실제적 동반성장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이다. 동반성장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그 내용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 실제 대기업 평가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준수하기 어려운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을 이행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포기하는 것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특히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기업은 사전적인 평가항목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 및 사후적·처방적 수단에 대한 규제 차원의 평가체계를 적절히 조화함으로써 현 동반성장평가 체계의 수용성 제고를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통계적 유의미가 없으며, 회귀계수의 크기도 매우 미약함.

본 연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대기업을 상대로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가 동반성장수준을 잘 반영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분석대상을 평가대상인 대기업에 한정해서 대기업의 수용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⁶⁾ 평가자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평가자인 중소기업과 평가대상인 대기업 양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의 또 다른 한계점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신뢰 등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연구가 희소한 바 이에 대한 현장 밀착형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당초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받는 중소 협력업체인 수급사업자들에게도 체감도조사 설문지를 배포했으나, 응답률이 거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및 기준 개정 설명회 자료』, 2016
- 김관보·김명수·채경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AHP기법의 적용」, 『규제연구』, Vol.18, No.2, 3-33, 2009.
- 김기찬·송창석·박지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유형의 세분화와 전략: 중소기업의 L, A, J유형 분류와 성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Vol.29, No.4, 133-151, 2007.
- 김기찬,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검증모형 연구』,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연구보고서, 2014.
- 김수욱, 『협력사 역량별 수요를 고려한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방안』,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연구보고서, 2014
- 김영산·마정근,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 『규제연구』, Vol.13, No2, 67-90, 2004.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백서』, 2015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백서』, p.34. 2013-2014.
- 산업자원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1년 ~ 2013년)』, 2011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p.310, 2005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p.49, 2007
- 이성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확산을 위한 스텝업 방식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 연구』,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연구보고서, 2014
- 이종욱,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참여유인 제고방안 - 동반성장지수의 인센티브 시스템의 매커니즘 디자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연구보고서, 2014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1차 이하 협력사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The Voice of Business』, 보도자료(2016.12.9)
- 주현·홍지승·홍석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백서』, p.25, 2012.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백서』, p.29, 2010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백서』, p.35, 2008

Forrester, Jay W. *Industrial Dynamics*, MA: MIT Press/Wiley, 1961.

Moore, James F,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1(3), 1993, pp:75-83

Williamson, Oliver E.,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_____,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Test of Validity and Remedies of Win-Win Growth Index Evaluation System Model: Acceptability of Large Enterprises & Reconciliation of Regulatory Reform

Kwanbo Kim and Taehoon K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Win-Win Index evaluation system model and recommend its remedies focusing on the acceptability of large enterprises and reconciliation of regulatory reform. Since 2011, the model has been annually being applied to Win-Win Index evaluation by the KCCP. The research model has consisted of four independent variables(evaluation factors) with their observable variables and one dependent variable(level). The findings of multiple-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fairness and validity of agreement fulfillment(TCP) process', 'appropriateness of win-win cooperation support agreement's terms', 'prevention and system construction against law violation', 'appropriateness of contract fairness agreement fulfillment terms of pre-revision(before 2016.2) of win-win model', 'appropriateness of sensory survey method of the Korea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KCCP)', and 'appropriateness of agreement fulfillment terms on the law violation prevention and law compliance effort' have positively affected the win-win level(index). Secondly, 'fairness and validity of contract fulfillment process', 'appropriateness of contract fairness agreement fulfillment terms of post-revision (after 2016.2) of win-win model', and 'post-monitoring system construction of law violation'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win-win level(index). Finally, several remedies of current Win-Win Index evaluation system model are recommended to reflect the current realistic Win-Win

Growth level along with acceptability of large enterprises & reconciliation of regulatory refor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sensory survey method by the mixture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s.

Key words: Win-Win Growth Index, Fair Trade, Sensory Level Survey, TCP Agreement Fulfillment Evaluation, Regulatory Reform.

부록: 설문지

『동반성장지수(동반성장 수준) 영향(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대기업 용= 원사업자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2010년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 및 공표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바람직한 동반성장지수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전경련 회원사(동반성장 평가 대상 원사업자) 및 중소기업(동반성장 체감도조사 대상인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동반성장수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인식도 조사입니다. 최근 2년(2014-2015)의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의한 동반성장 추진 체계, 추진계획, 추진 성과 및 2016년 개정된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참고해서 공통적인 요인들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을 작성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의견은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 적합성을 지닌 동반성장지수개편을 위한 소중한 정책 자료 개선안을 건의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 항목들에 대한 응답 지침에 따라 동반성장지수(수준)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귀하의 경험과 고견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본인이나 소속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분리되어 따로 처리되기 때문에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일

·연구수행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 관 보 교수(행정학, 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010-7108-9124)

<일반사항 (* 적합한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1. 귀하의 소속은?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협력사(1차 협력사) ③ 중소기업 협력사(2차 협력사)
2. 1의 대기업의 경우	A) 귀사의 공정거래 협약 참여 여부	① 공정거래 협약 참여 중 ② 공정거래 협약 미참여
	B) A의 공정거래협약 참여의 경우 그 연한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5년 이상
3. 1의 중소기업 협력사의 경우	A) 귀사의 협약 참여 여부	① 협약 참여 중 ② 협약 미참여
	B) A의 협약 참여의 경우 그 연한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5년 이상
	C) 수급사업자 여부	① 수급사업자 ② 비수급사업자
4. 귀사의 관련 산업 업종		① 제조업(전기·전자) ② 제조업(기계·자동차) ③ 제조업(조선) ④ 제조업(화학·비금속·금속) ⑤ 건설업 ⑥ 정보서비스업 ⑦ 통신업 ⑧ 식품업 ⑨ 광고업 ⑩ 인터넷플랫폼업 ⑪ 도매 및 소매업 ⑫ 기타 () * 단, 중소기업(수급사업자) 소속일 경우에는 주거래 대기업의 영위 산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1 동반성장지수의 영향(결정) 요인에 관한 사항

I. 공정거래(계약의 공정성) 요인에 관한 사항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A.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A-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공정 하도급거래 4대 실천 사항 중 하나)을 준수하고 있다(협력업체 공정한 선정). * 예시: 선정기준·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	①	②	③	④	⑤
(1A-2) 계약이전 주요 정보(물량, 납기 등)를 사전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사전 알림시스템 구축). * 예시: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 예정물량, 납기 등 중요 정보 제공 등	①	②	③	④	⑤
<1B. 서면계약 내용의 충실성·공정성>					
(1B-1)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하도급약서를 사용한다(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①	②	③	④	⑤
(1B-2) 중소기업사(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계약조항의 명시). * 예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요건 및 범위, 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 절차, 특정업체 물품 사용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 목적물 검사 기준 및 방법, 목적물 수령후 하자 책임 귀속주체 및 부담비율	①	②	③	④	⑤
(1B-3)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명시하고 있다(하도급대금지급조건 명시).	①	②	③	④	⑤
(1B-4) 거래 기업간(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티(제재)를 제시하고 있다(쌍방간의 계약 불이행 제재 명시). * 예시: 납기지연, 수령 지연 등에 대한 제재 및 그 수준의 형평성	①	②	③	④	⑤
<1C.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1C-1) 하도급대금지급조건(1B-3)에 대한 이행결과가 중소기업사(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다(하도급대금지급 조건 이행 결과의 권익증진). * 예시: 대금지급절차 마감 횟수, 하도급대금지급 일수 및 단축 정도, 현금결제비율 및 계고 정도, 현금성결제비율 및 계고 정도	①	②	③	④	⑤
(1C-2) 거래 기업간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 부과(1B-4)의 이행결과가 적절하다(제재조치 이행 결과).	①	②	③	④	⑤
(1C-3)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분쟁해결절차 마련 및 운영). * 예시: 신속한 분쟁조정 기구 마련,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등	①	②	③	④	⑤
(1C-4) 중소기업사(수급사업자)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협력사 매출 확대 도모). * 예시: 해외 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①	②	③	④	⑤

II.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요인에 관한 사항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A.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시스템 구축>					
(2A-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공정 하도급거래 4대 실천사항 중 하나)을 준수하고 있다(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 실천사항). * 예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설정하는 특약조건 건의 부당특약 여부,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①	②	③	④	⑤
(2A-2)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공정 하도급거래 4대 실천사항 중 하나)을 준수하고 있다(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 * 예시: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①	②	③	④	⑤
(2A-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 사항'(공정 하도급거래 4대 실천사항 중 하나)을 준수하고 있다(계약체결 실천사항) *예시: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①	②	③	④	⑤
(2A-4)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예시: 대금지연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 소지 최소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2A-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를 설치하고 있다(공정거래 추진 부서 설치).	①	②	③	④	⑤
<2B.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2B-1)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예시: 일정 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책임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 여부 등)	①	②	③	④	⑤
(2B-2) 하도급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불법 임직원 인사 불이익).	①	②	③	④	⑤

III. 상생협력 지원 요인에 관한 사항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A) 중소기업사(수급사업자)에게 금융(자원) 지원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 (금융/자금지원) *예시: 직접지원액+ 특별지원액+ 혼합지원액, 간접지원액(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3B) 중소기업사(수급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보호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기술지원 및 보호) *예시: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보호건수(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3C) 중소기업사(수급사업자)에게 인력 및 채용 지원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인력·채용지원)	①	②	③	④	⑤
(3D) 중소기업사(수급사업자)에게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1-2차 상생협력). *예시: 직접지원액+ 특별지원액+ 혼합지원액, 간접지원액(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등					
(3E) 중소기업사(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효율성 증대 정도). *예시: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절대적 금액, 거래 기업 전년 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경쟁력강화 등을 통한 수출확대; 제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IV. 공정거래 협약 이행 조건(평가항목 배점) 및 동반위 체감도 조사 방법 인식도 요인에 관한 사항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계약 공정성 협약이행 조건, 범위만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협약이행 조건, 상생협력지원 협약이행 조건(평가 항목 배점 인식도)>					
(4A) 공정위의 계약 공정성에 대한 협약 이행 조건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다(계약공정성 협약 이행 조건) *예시: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공정성,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의 협약 이행조건(평가항목 배점) 등	①	②	③	④	⑤
(4B) 공정위의 범위만 예방 및 법준수 노력에 대한 협약 이행조건(평가 항목 배점)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범위만 예방 및 법준수 노력 협약이행 조건) *예시: 범위만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범위만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협약이행 조건(평가 항목 배점)	①	②	③	④	⑤
(4C) 공정위의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협약 이행 조건(평가항목 배점)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다(상생협력지원 협약이행 조건) *예시: 금융(자금)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인력·채용 지원,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효율성 증대 정도 등의 협약이행 조건(평가항목 배점)	①	②	③	④	⑤
(4D) 동반성장위원회의 체감도 조사 평가 방법과 평가항목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방법) *예시: 현재의 상대평가, 정성평가, 평가 배점(가중치) 등의 방법	①	②	③	④	⑤

2 동반성장지수(동반성장 수준)에 관한 사항

V. 동반성장지수의 동반성장 수준 및 현실적합성에 관한 사항(결과)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동반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동반성장 수준).	①	②	③	④	⑤
(5-2) 현행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수준을 잘 대변하다(동반성장지수의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5-3) 동반성장지수는 현실적으로 적합하다(동반성장지수 현실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5-4) 동반성장지수는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5-5) 나는 동반성장지수를 신뢰하고 수용한다(신뢰성/수용성).	①	②	③	④	⑤

3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동반성장지수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포함)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